2025 제주다양성영화 후반작업 지원사업 공고

제주특별자치도와 (재)제주콘텐츠진흥원에서는 「2025 제주다양성영화 후반 작업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> 2025. 2. 10. (재)제주콘텐츠진흥원장

1. 사업목적

- 지역 내 우수작품에 대한 후반작업 지원을 통해 영화의 완성도와 품질을 높임으로써 제주 영화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
- 제주 영화들이 영화제 출품 및 개봉 등의 성과를 이루도록 지원하여, 제주다양성영화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영상산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함

2. 사업개요

O 사 업 명: 제주다양성영화 후반작업 지원사업

O 협약기간 : 협약체결일(지원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) ~ 2025. 12. 11.

O 지원내용 : 후반작업 참여 인건비, 후반작업 업체 위탁비, 대관료 등 지원

% 후반작업 범위 : 편집, CG, 녹음, 믹싱, 자막, 색보정(DI), 사운드 마스터링, 녹음실 대관 등

- O 지원대상 : 촬영(production)이 완료된 순제작비 10억 원 미만의 제주다양성영화 (독립영화, 예술영화, 다큐멘터리영화 등)
- O 지원자격: 아래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
 - 가. 당해 사업연도 이전 주 사업장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콘텐츠(영화, 영상, 방송, 미디어 등) 제작 사업자
 - 나. 당해 사업연도 이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개인창작자 (감독, 메인 프로듀서, 메인 작가에 한함)
 - ※ 도내 지역 또는 학교 출신자, 명예도민증 또는 재외도민증 소지자 포함
 - ※ 1인(제작사)당 1편의 작품만 지원가능(중복접수 불가)
 - ※ 지원자격 증빙서류는 반드시 제출(미제출 시 자동으로 심사에서 제외)
 - ※ 도내 영화 제작 활동 경력(최근 5년) 우대가점 적용(하단 심사기준 참고)

O 지원규모 : 2편 내외, 총 지원금 16,000천원

지원부문	편당 최대 지원금액	비고			
장편	최대 1천만 원 이내 차등지급	상영시간 60분 이상 장편영화			
단편	최대 6백만 원 이내 차등지급	상영시간 60분 미만 단편영화			

- ※ 지원금액의 10% 이상 자부담 의무매칭
- ※ 부문별 선정편수 및 지원금액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
- ※ 각 부문 해당작이 없거나 잔여 예산 발생 시 예산 전액 또는 일부 통합하여 변동 가능
- O 사업비 사용 용도 : 후반제작 작업비 용도로만 집행 가능 * 별첨 〈사업비 집행기준〉 참고

구분	사용 용도
인건비	· 후반작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작업인력의 직접 인건비 ※ 신청자 개인 또는 사업자(개인, 법인) 대표에게 집행 불가
임차비	· 후반작업 업체 위탁비(CG, 편집, 믹싱 등), 장소(녹음실 등) 대관료 등

- ※ 인건비는 총사업비의 70%까지 집행 가능
 - 인건비 집행 시 원천징수세 납부 및 2025년 최저시급 준수 의무
 - * 시급(1시간 기준) : 2025년 10,030원 / 월급(209시간 기준) : 2,096,270원
 - 원천징수세액, 4대 보험료 집행 가능(단, 고용주 부담금 제외)

O 운영절차



3. 신청 및 접수

- O 공고기간 : 2025. 2. 10.(월) ~ 3. 5.(수)
- 접수기간 : 2025. 2. 24.(월) ~ 3. 5.(수) 14:00까지, 10일간 ※ 접수 마감일(3월 5일 수요일 14:00)까지 도착하지 않은 이메일은 접수되지 않음
- O 접수방법 : 이메일 접수(click0925@ofjeju.kr)

- ※ 제출 후 확인 전화 필수(☎ 064-735-0622)
- ※ 제출서류(양식)는 진흥원 누리집(https://ofjeju.kr) [공지사항] 또는 [사업신청] 참조
- ※ 실적증명 자료 중 파일전송이 불가한 경우 접수기간 내 방문접수 가능(진흥원 본원 2층 콘텐츠육성팀)

O 제출서류

붙임	제출서류	유의사항	제출형식
1	지원신청서	· 서명 또는 날인 필수	
2	사업계획서	· 내용 파악이 용이하도록 작성	
3	후반작업비 예산계획서	· 인건비, 임차비 2개 항목 구분 작성 · 별첨 <사업비 편성기준> 참고하여 작성	[붙임 1~3],
4	참여제한 체크리스트	ㆍ 서명 또는 날인 필수	[붙임 4~11], [붙임 12]
5	개인정보 수집・이용 동의서	· 감독, 메인 프로듀서, 메인 작가 필수 기재	3개 파일을 하나의
6	예비 심의위원 추첨표	· 무작위로 3개의 번호를 3회 지정하여 체크	압축파일(ZIP)로 제출
7	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초본	· 제작사 : 사업자등록증 · 개인 : 주민등록초본(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체크)	압축파일명과
8	국세 완납증명서	· 납세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필수	메일 제목은 '영화명_제주
9	지방세 완납증명서	· 납세증당시 되는 3개월 에네 달밥 달구	다양성영화 후반작업
10	제주영화 제작 활동 증명 (해당자에 한함)	· 최근 5년 동안 도내에서 영화 제작 활동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신청자(사)	지원'으로 제출
11	기타 선정평가를 위해 필요한 서류 (희망자에 한함)	· 영화 제작 활동 경력 증명(KOBIS 참여내역서 등) · 유통·배급 투자계약서, 타 기관 협약서 등	
12	신청작품의 편집영상 1식	· 가 편집본 전체영상 제출 또는 다운로드 링크 삽입	

- ※ 신청서 및 기타서류 등 날인이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직인 또는 서명 후 PDF로 스캔하여 제출해야 함
- ※ 제출서류의 기재 착오, 누락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신청자(사)에 있음
- ※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 및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 취소, 협약 해지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음

O 접수 및 문의

담당자	메일주소	문의전화		
콘텐츠육성팀 고경욱 주임연구원	click0925@ofjeju.kr	064-735-0622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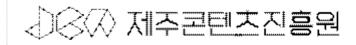
4. 지원조건 및 참여제한

O 지원조건

- 가. 최종 지원금액의 10% 이상 자부담 의무매칭
- 나. 지원금의 100%에 해당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 제출
 - ※ 보증보험 수수료는 개인 부담이며, 보증보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협약 취소
- 다. 협약기간(협약체결일 ~ 2025. 12. 11.)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, 사업종료일 (2025. 12. 30.)까지 목표로 제시한 완성본 제출
 - ※ 완성본 제출기한은 진흥원과 사전 협의한 경우 1회(최대 6개월 이내)에 한하여 연장가능하며, 이 경우 별도의 신청서와 함께 해당 기간만큼 이행지급보증보험을 갱신하여 추가 제출하여야 함(지원금의 이월은 허용하지 않음) ※ 단, 당초 협약기간 내 후반작업을 시작하지 않은 작품은 연장 불가
- 라. 완성본 제출 후 1년 이내에 국내외 개봉(방영), 영화제 출품 등 결과물 활용 내역 제출
- 마.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콘텐츠진흥원의 지원 사실을 상영본(크레딧) 및 홍보물 등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

소정 양식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콘텐츠진흥원 제주다양성영화 후반작업 지원작





바. 진흥원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알게 된 성과물 및 수행기업 정보를 연구 및 정책개발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, 사업종료 이후에도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

O 참여제한 (신청 및 심사 제외 대상)

- 가.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
- 나.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(과제 목표, 산출물 등)으로 제주특별자치도(산하 유관 기관 포함)로부터 중복하여 후반작업 지원을 받은 경우
 - ※ 국가기관 및 타 지자체, 민간단체에서 시행하는 후반작업 지원사업 동시 지원은 가능하나, 예산 중복 지출 및 증빙 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진흥원 및 타 후반작업 사업 기관에도 통보해야 하며 모든 책임은 신청자(사)에게 있음 ※ 진흥원의「제주다양성영화 제작지원 사업」에 선정이력이 있는 작품은 신청 가능
- 다. 신청일 기준 「제주다양성영화 제작지원 공모사업」에 선정된 후 완성본을 제출하지 않은 제작사(대표자), 연출자, 개인인 경우
- 라. 진흥원 지원사업의 정산/환수금 등이 미완료/미납 중이거나 진흥원 관련 규정 또는 협약 및 계약 등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제작사(대표자), 연출자, 개인인 경우
- 마.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거나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

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
- 바. 「영화인 신문고」기준 스태프 등에 임금체불로 인하여 분쟁 혹은 소송 중에 있거나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제92조에 해당하는 경우
- 사. 기타 심사위원회가 부적격하다고 판단, 의결한 작품
- 아. 위 사항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접수 및 선정 취소(지원금 환수,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)

5. 심사 및 선정

- O 심사위원회 구성: 각 분야(연출/제작/영화제 프로그래머 등) 외부전문가 3인 내외로 구성
- **심사일정** : 2025년 3월 중 (※ 진흥원 내·외부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)
- 심사방법 (※ 접수현황에 따라 심사의 세부내용 조정 가능)

1차 서류		2차 면접심사		발표
접수작 서류 검토 ※ 미비서류 발생 시 지원신청 취소될 수 있음	>	심사위원과 신청단체(자)의 질의응답 (10분~15분 내외)	>	지원부문별 고득점순 지원작품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

※ 1차 서류 통과 신청단체(자)는 개별 연락을 통한 면접일시 안내 예정

O 심사기준

심사기준	심사항목	배 점
작품 우수성	•작품의 완성도 및 독창성 •후반작업 의지에 대한 타당성 •작품 내 지역 요소 반영도(제주소재, 제주 로케이션 등)	40점
제작(수행) 역량	• 예산 운용의 합리성 및 실행가능성 • 기술역량 및 인력구성의 적절성	30점
작품 활용계획	• 작품 활용(유통·배급)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성 • 마케팅 전략 및 수익화 방안	30점
합계		

우대가점	• 5년 이내 도내 영화·영상 관련 활동 경력(3점) • 「제주다양성영화 제작지원 사업」지원작품(3점) • 진흥원 내 입주기업(2점)	최대 5점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

- ※ 심의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선정된 작품에 한하여 신청 예산 한도 내 지원금액 산정
- ※ 모든 우대가점 사항은 평균 6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최대 5점까지 인정되며, 관련 증빙서류 필히 제출
- ※ 선정작품의 지원자격 자진포기 또는 결격사유가 발생해 선정이 취소될 경우 차순위 작품에게 지원 승계할 수 있음

6. 지원금 지급·집행·정산

협약체결		지원금 지급		지원금 집행		지원금 정산
진흥원↔선정작	•	지원금의 100% 지급	•	과제수행	>	정산보고
지원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협약체결	이행보증보험증권, 사업비 관리통장 등 제출		협약일 ~ 2025.12.11.		결과보고서, 사업비 통장내역, 집행증빙자료 등	

O 지원금 지급

- 가. 신청자(사)는 지원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원금 지급방법, 정산 및 결과보고 등 지원사업 내용에 대한 협약체결을 완료해야 함
- 나. 지원금은 협약체결 후 별도 신청에 의해 지급 ※ 지원금 교부신청 공문, (수정)사업계획서, 이행보증보험증권, 사업자등록증(등본), 통장사본 등
- 다. 신청자(사)는 지원금 지급 시 제반서류 및 필요한 진행사항 등의 확인을 위하여 진흥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함

O 지원금 집행

- 가. 신청자(사) 명의의 별도 통장과 전용 카드를 통해 <u>사업비(지원금 + 자기부담금)</u>를 관리하여야 하며, 진흥원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함 ※ 사업비는 체크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집행(현금인출 집행 방식 금지)
- 나. 집행기간은 협약서상 수행기간(협약체결일 ~ 2025. 12. 11.)으로 하며 지출항목, 금액 등 당초 제시했던 계획에 따른 집행을 원칙으로 함
- 다. 진흥원은 신청자(사)의 사업비 집행 및 정산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고,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의뢰할 수 있음. 이 경우 신청자(사)는 성실히 응해야 함
- 라. 후반제작(편집, CG, 녹음, 믹싱, 자막 등) 작업비 용도로만 집행하여야 함

O 지원금 정산

- 가. 신청자(사)는 협약종료일 이전까지 진흥원이 요청하는 양식의 결과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- 나. 정산범위 : 총사업비(지원금 + 자기부담금(지원금의 10% 이상))
- 다. 제출서류 : 공문 및 결과보고서, 사업비 관리 통장 거래내역 사본, 집행 증빙 자료, 완성작 등
- 라. 사업비 사용결과 부당사용, 기타 협약의 해약사유가 발생될 경우 진흥원은 해당 신청자(사)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, 향후 진흥원의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

7. 기타사항

O 결과물 귀속

- 가. 제작된 작품의 저작권은 제작사 또는 감독에 귀속되나 아래의 활용 권한을 진흥원에 인정함
 - 작품의 전체 혹은 일부를 공익 목적에 한하여 온 오프라인 무료사용 (단, 사용 전 상호 협의 후 진행)
 - 진흥원 시설 운영(스튜디오, 영화관, 공연장 등), 제주특별자치도 및 진흥원 에서 주최(관)하는 행사 및 홍보 등에 활용
 - 기타 지원 취지에 따른 홍보마케팅, 영상물·책자 발간 등 진흥원 사업과 관련한 활용 등
 - 시사회 개최 등 진흥원이 요청하는 관련 사업에 적극 협력
 - 신청자(사)가 제출한 스틸컷의 비상업적 활용 동의(보도자료 등)

O 유의사항

- 가. 본 사업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, 진흥원에서 정하는 관련 규정 및 규칙 등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신청자(사)는 이를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
- 나. 다음의 경우 지원금 환수(이자 포함),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
 -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
 - 사업비를 영화 후반작업 비용 외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 - · 신청자(사)가 법령의 규정, 지원금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진흥원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
 - 결과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정산 등 결과가 미흡할 경우
 - 협약기간 내 제작을 중단·포기하거나 지원사업 종료일까지 결과 영상물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
 - 지원신청 시 제출했던 내용 등이 사전 협의 없이 현격히 다르거나 해당 지원금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
 - 신청자(사)의 사업수행 능력 상실 또는 지원작품(작가 포함)이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되었거나 저작권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
 - ※ 원칙적으로 해당 작품에 사용되는 모든 형태의 외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신청자(사)가 해결한 후 작품에 사용해야 함
 - 기타 진흥원 지원사업 운영관리 규정 및 규칙에서 정한 협약체결 중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
 - 위 사유 등으로 계속해서 협약유지가 어려울 경우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및 진흥원 지원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11조에 의하여 지원사업 제재조치(과제가

중단된 경우, 향후 2년간 진흥원 지원사업에 참여제한) 및 이행보증보험에 의거 강제 환수조치

- ※ 사업내용 및 지원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, 본 사업의 신청 및 사업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(사)의 책임으로 봄
- %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수정공고 추진